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기원, 확장과 사례분석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정용균*

Yongkyun Chung

〈목 차〉

- I. 서 론
- II.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와 확장
- III.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사례분석
- IV. 함 의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멀티도어 확장모형, 법원연계 형 조정, 대체적 분쟁해결(ADR)

* 저자는 2017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조성비(관리번호: 520170111)지원을 받아 연구하였음.

** 국립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

I. 서론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법원이 소송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인식을 넘어서, 소송 외에도 조정이나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프로그램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법원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법원모형이 도래하게 된 데는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에 기인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¹⁾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가 실행되면서 변호사들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²⁾, 법원 내부에 설치된 ADR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일련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³⁾, 우리 법원은 법원 내부에 법원조정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⁴⁾ 또한 최근에는 중재법이 개정되었고 중재산업진흥법이 공포되었다.⁵⁾ 이러한 국내외적 법률 환경변화에 비추어볼 때,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중요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는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프랭크 샌더(Frank Sander) 교수의 제안⁶⁾으로 미국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동 개념에 따르면, 법원은 국민에게,

- 1) Macfarlane, Julie, "Evolution of the New Lawyer: How Lawyers are Reshaping the Practice of Law",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8, No.1, 2008, p.62 (동 저자는 미국이 오늘날 ADR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데는 소송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2) 협업적 변호기법은 가족법 분야에서 시작되어 미국의 26개 주, 캐나다 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Schwab H. William, "Collaborative Lawyering: A Closer Look at an Emerging Practice",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4, No.3, 2004, p.355.
- 3) 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573호, 2004년 6월, pp.76-95. 손수일, "미국법원에서의 ADR 발전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Early Neutral Evaluation", 『재판자료』, 법원도서관, 제73집, 1996년, pp.47-84. 정갑주, "미국법원에 있어서 ADR의 제도화", 『재판자료』, 법원행정처, 제58집, 1992.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도입방안",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3권, 제1호, 2009년 5월, pp.490-524. 유승훈, "민사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4권, 제1호, 2001년, pp.490-524. 함영주, "미국 법원 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E.D.N.Y)과 뉴욕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4권, 2010년 6월, pp.149-192. 최승필,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공법학회, 제11권 제1호, 2010. pp.325-354.
- 4) 이영진, "법원 조정의 이해: 조정전담부의 운영현황과 조정실무", 『제1기 조정전문가 과정 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정학회, 2012년, p.19
- 5)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7권 제4호, 2017, pp.35-60.
- 6) 프랭크 샌더 교수는 1975년 스웨덴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당시 가족법상의 중요 문제였던 미혼상태의 커플 동거문제와 그들의 법적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는 노동중재를 경험하였고 법원에서 가족 분쟁 관련 일을 보았다. 샌더교수는 법원이 가족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노동분쟁이 중재를 활용하여 해결되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샌더교수는 생각을 정리한 다음 이에 대한 메모를 하버드 법대 동료 교수들에게 보냈다. 이 중 한명이 메모를 펜실베이니아 법대의 교수 한명에게 보냈는데, 그 교수가 당시에 미국 워렌 버거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같이 파운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76년에 개최될 파운드 회의에서는 기존의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며 그 중 한 주제가 분쟁해결이었다. 샌더 교수가 미국에 귀국했을 때 워렌 버거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전보를 보내서 분쟁해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해줄 것을 요청하여, 동 회의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이 발표되었다. Sander, E. A. Frank and Crespo,

더 이상 소송이라는 하나의 분쟁해결수단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분쟁해결기관은 소송에 이르는 하나의 ‘문’만 가지는 대신에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해결방식 즉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에 이르는 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은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 미국의 법원에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민사사법개혁법이 제정되면서, 모든 연방지방법원들은 민사소송에서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되었다.⁷⁾ 더 나아가 1998년에 제정된 소송대체분쟁해결법(ADR법) 이후, 연방지방법원들은 ADR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자신의 관할 내에서 대체적 분쟁해결방법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었다.⁸⁾ 이에 따라서 연방지방법원들은 법원 내에 다양한 ADR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까지 미국의 94개 연방지방법원 중 대부분의 법원에서 판사들이 ADR을 사용하도록 수권되었으며, 이들 중 3분의 1에 법원연계 형 조정절차와 중재절차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⁹⁾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미국에서 긍정적 평가 토대 위에서 활용되어 오고 있으며¹⁰⁾ 여러 나라에 도입되고 있어서, 동 제도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실행이 관할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¹¹⁾, 법원 내에서 분쟁해결의 실제 담당자의 교육이 요청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은 계속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첫째,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의 형성배경과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에 대하여 살펴본다. 둘째, 미국,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나이지리아 등 다양한 지역 및 국가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의 발전과 전개에 대하여 살펴본다. 셋째,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성공 및 장애요인과 미래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H. Mariana, "A Dialogue between Professor Frank Sander and Mariana Hernandez Crespo: Exploring the Evolution of the Multi-Door Courthouse",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Vol.5, No.3, 2008, p.669.

7) Wald, M. Patricia, "ADR and the Courts: An Update", *Duke Law Journal*, Vol.46, No.6, 1997, p.1446.

8)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Have We Fou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No.1, 2002, p.112.

9) Wald, M. Patricia, "ADR and the Courts: An Update", *Duke Law Journal*, Vol.46, No.6, 1997, p.1447.

10) 2000년 8월 제9 연방항소법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연방판사의 90퍼센트가 ADR이 민사사건에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의 95퍼센트 역시 ADR이 민사사건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Have We Fou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No.1, 2002, p.112.

11) 예를 들어 연방항소법원들은 법원 내 ADR 담당자들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며 이들은 법원 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1심법원의 경우는 ADR 담당자들에 대하여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변호사들이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받아서 A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ack, W. Robert, "Thoughts of a Chief Circuit Mediator on Federal Court Annexed Mediation",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7, 2002, pp.612-613.

II.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와 확장

1. 배경

전통적으로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분쟁당사자들 간 대립적 성격의 분쟁해결수단인 소송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각국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법원 내부로 융합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법원 내부로 ADR제도가 도입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법원에 사건이 너무 적체되는 바람에 소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둘째, 소송 자체가 가져오는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국민들에게 적절한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소송은 승자와 패자가 극명하게 갈라지게 하는 분쟁해결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관계와 같이, 분쟁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서는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 소송제도 보다는, 양자 간 타협과 절충을 통한 우의적인 해결 가능성이 있는 ADR제도가 당사자 관점에서는 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대에 오면서 분쟁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판사가 그 모든 분쟁에 전문가가 될 수 없다는 사정 또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ADR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과거 농촌 사회 내에는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¹²⁾ 그러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농촌사회가 급속하게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전통사회 자체 내부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분쟁해결제도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에 도시 지역에서는 과거 농촌사회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분쟁해결제도들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법원이 도시에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를 법원 내부로 끌어들이 유인이 존재하는 측면도 있다. 위에서 열거한 도입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2)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서로 인접해 있지만 다양한 분쟁해결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우는 이슬람 전통에 기초하여 무사와라-무파카이라는 만장일치 식 분쟁해결 전통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으며, 베트남 촌락의 경우, 유교 전통에 입각하여 향약이라는 관습법이 시행되고 있다. 태국에서는 불교 중도철학에 따라 극단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타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발언하기 보다는 침묵을 고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역시 알선이 중요한 분쟁해결방법이었다. 정용균, “인도네시아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ADR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25권 제3호, 2016년 1월, p.93. 정용균, “태국의 분쟁해결 및 협상전략: Hofstede의 비교문화경영이론을 중심으로”, 『태국학회논총』, 한국태국학회, 제23권 제1호, 2016년 8월, pp.117-126. 정용균, “베트남의 분쟁해결문화와 협상전략: 지역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8권 제4호, 2016년 12월, p.235. Stanton, H. Thoma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utionary Tale of Colonial Burm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1, No.1, 2014, p.167.

첫째, 소송 자체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천 년 대 들어서 변호사 보수가 90년대에 비하여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판에 관련된 의사, 과학자, 회계사,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보수 역시 상향 조정되어 미국의 경우, 소송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¹³⁾ 이 결과 분쟁당사자들이 법원을 활용하고 싶어도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법원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과의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정의로의 접근(access to justice)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¹⁴⁾ 개발도상국의 경우, 법원이 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국민의 상당수는 농촌사회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가려고 해도 도로 사정 등이 열악해서, 농촌에서 도시로 갈 수 없어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 역시 거래비용 관점에서 보면, 소송에 따른 거래비용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각자 소송에 따른 거래비용이 너무 커서 국민들이 법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여러 문헌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가 도입되게 된 큰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은 법원의 사건 적체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관은 임지에 부임하였을 때, 이미 이전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관의 체력과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제한된 법관의 체력과 정신력 내에서 그 법관에게 할당되는 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개의 사건에 투입되는 법관의 시간과 집중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¹⁵⁾ 그러나 법관의 수를 늘리는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법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의 적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비중이 큰 사건, 예를 들어 고액사건이나 형사상 살인사건 등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되, 소액사건이나 분쟁과정에서 당사자 간 감정의 격앙이 심하여, 소송에 까지 이른 경우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작으며, 감정이 앞서서 분쟁이 악화된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내심 후회하게 될 가능성도 배

13)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Have We Fou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No.1, 2002, p.126.

14) 오늘날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사법제도의 개선 문제는 주요 의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Maru, Vivek, "Access to Justice and Legal Empowerment: A Review of World Bank Practice", *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Vol.2, No.2, 2010, pp.259-281.

15)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 교수의 Bounded Rationality 개념에 의하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나 두뇌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가지기는 하나,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지 못하고,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존재라고 설파하였다 Simon, Herbert,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8, No.2, 1978, pp.1-16 상당수 판사들은 사건에 밀려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제한된 합리성을 갖는 존재인 판사는 자신의 용량을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전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할 수 없다. 더구나 재판기일에 맞추어서 법원에 출두하게 되면 자신의 직장생활마저 위태롭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법원이 다른 절차를 활용하려고 계도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셋째, 소송은 분쟁의 성격이 일회성 사건의 경우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당사자들이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서로 이익이 되는 경우는 조정 등 ADR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¹⁶⁾ 예를 들어 같은 마을이나 같은 도시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소송까지 가서 승자와 패자로 갈라진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서로 얼굴 보기가 난처해질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때, 기업 간(B2B) 상거래 경우에는 거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서로 지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계속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하청회사는 원청회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역의 경우도 수출업자와 바이어 관계도 장기간 지속되어야 할 관계이다. 이러한 경우 분쟁을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실령 당해사건에서는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바이어와 단절된다면 수출 기업의 수익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조정 등 ADR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현대에 올수록 기술발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이 이러한 새로운 전문지식에 모두 능통하기는 요원한 것이다. 과거에는 재산권이 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 실체가 존재하는 물적 재산권이였다. 따라서 모든 법률체계도 물적 재산권의 전제하에 입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량생산수단의 확산으로 물건 자체 단위 생산비가 획기적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전체 재산권 비중에서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해지는 추세이다.¹⁷⁾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서, 수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제무역의 경우, 해상 보험료를 지불하고 선박을 활용하여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보다는 물품의 설계도를 파일 형태로 해외의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매수인이 자기 나라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는 상황도 고려해야할 가능성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같이 영토가 매우 광대한 국가에서는 국내 거래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법관이 이러한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대비 한다고 하더라도 사건 적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 대처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분쟁해결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16) Dress, P I,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10, No.3, 1988, pp. 569-575.

17) 애플과 삼성간의 휴대폰에 대한 국제소송도 디자인에 대한 침해여부가 쟁점사항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현대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대규모 인구이동이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도시화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급속하게 농촌에서 도시로 특히 청년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팽창에 비례하여 도시 지역에 새로운 분쟁해결제도들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하겠다¹⁸⁾.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공동주택인 도시 지역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이다. 전통 농업사회에서는 그 지역에서 출생하고, 서로 친인척인 관계도 많은 등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여서, 이웃 간 분쟁은 마을의 연장자 어른신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⁹⁾ 그러나 도시 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바람에 서로 잘 모르는 이웃이다. 따라서 도시에서는 분쟁당사자 양측을 알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른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파트 동대표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되고 있지만, 전통 마을의 연장자와 같은 권위를 갖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층간소음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할 것이다. 만약 도시에도 농촌과 같이 당사자 양측에서 권위가 인정되는 제삼자가 우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층간소음문제는 보다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기본 모형

1976년 파운드 회의에서 프랭크 샌더교수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multi-door courthouse)라는 새로운 유형의 법원 개념을 제시하였다.²⁰⁾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이 활성화된 데는 70년대 이후 한 세대동안 주요 인사들의 공헌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미연방대법원 워렌 버거 (Warren Burger) 대법관은 1970년대 초부터 변호사들의 변론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²¹⁾ 1970년대 중반에는 소송을 중재로 대체하자는 견해

18) 미국의 경우 법원에 사건이 적체되기 시작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사회가 변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농촌에서 분쟁해결을 담당하던 제도들이 약화되었으며 이 결과, 공식적인 소송절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소송에 대한 선호도 증가는 대가족제도, 이웃, 교회, 공동체 등, 전통적 분쟁해결기관들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상실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견해이다.

19) 전통사회의 경우 마을의 연장자나 종교지도자 등이 담당하였다. 태국 등 불교국가에는 마을 한 가운데 불교 사찰이 위치해 있으며 사찰은 교육기관, 의료기관, 분쟁해결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용근, “태국의 분쟁해결 및 협상전략: Hofstede의 비교문화경영이론을 중심으로”, 『태국학회논총』, 한국태국학회, 제23권 제1호, 2016년 8월, p.97.

20) Sander, E. A. Frank and Crespo, H. Mariana, “A Dialogue between Professor Frank Sander and Mariana Hernandez Crespo: Exploring the Evolution of the Multi-Door Courthouse”,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Vol.5, No.3, 2008, pp.665-674.

21)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 No.2, 1996, p.313.

를 주장하였다.²²⁾ 그 이후, 자넷 리노(Janet Reno) 법무장관이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자넷 리노 장관은 1995년 민사사건 담당 변호사들이 모두 대체적 분쟁해결기법에 대하여 교육받도록 지시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기법 활용이 촉진되는데 기여하였다.²³⁾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은 법원이 더 이상 소송이라는 하나의 분쟁해결수단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분쟁해결기관은 소송에 이르는 하나의 창구만 가지는 대신에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해결방식 즉 조정, 중재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에 이르는 창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랭크 샌더교수는 서로 무관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의 경우에는 소송과 같은 적대적 성격의 분쟁해결수단이 적절한 해결수단이지만, 서로 오랫동안 알고지내고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은 조정과 같은 덜 적대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²⁴⁾ 프랭크 샌더교수가 원래 고안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은 아래와 같이 7개의 방으로 구성되었다.²⁵⁾

선별담당관	1호실
조정	2호실
중재	3호실
진상조사부	4호실
과오선별부	5호실
재판부	6호실
옴부즈맨	7호실

22)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 No.2, 1996, p.315.

23) 이와 동시에 법무장관은 조정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백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ADR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조정, 중재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명칭 대신, 적절한 분쟁해결(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Senger, Jeffrey, "Turning the Ship of Stat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2000, p.83. 대체적으로 분쟁은 성격상 하나의 사건 내에 민사적 문제와 형사적 문제를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정프로그램은 사건 일부만을 다루는 법원과는 달리 분쟁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Ray, Larry and, Clare, Anne, "The Multi-Door Courthouse Idea: Building the Courthouse of the Future--- Today",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1, No.1, 1985 p.15.

24)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 No.2, 1996, p.327.

25) Edwards (2013), p.19 참조,

Ray and Clare(1985)는 이를 정리하여 멀티도어코트하우스²⁶⁾ 모형을 세 단계로 요약하였다. 첫째 단계는 분쟁접수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분쟁접수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분쟁접수기관은 경찰, 검사, 담당판사, 소비자보호기관, 공무원, 시민단체, 사회서비스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이러한 접수기관에 가서 자신의 사건을 접수시킨다. 두 번째 단계는 분쟁진단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분쟁평가기관에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된 사건을 선별하고, 평가해서, 그 사건에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에 회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세 번째 단계는 분쟁해결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절차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여기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으로는 조정, 알선, 중재, 조정-중재²⁷⁾, 음부즈맨, 소송 등이 활용가능하다. 프랭크 샌더교수가 제안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하나의 지붕아래 다양한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맞춤형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는 모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센터내의 사건 선별부서는 시민의 분쟁들을 진단해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창구를 제시한다. 이때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사건접수 담당자는 분쟁당사자와의 최초의 접촉단계에서 전화를 통한 알선이나 추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자체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²⁸⁾ 만약 사건접수담당자가 일차적으로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그들은 분쟁당사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분쟁해결수단을 제시한다. 따라서 사건접수담당자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전체적 차원에서 볼 때 특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겠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모형내의 사건접수담당자의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사건접수담당자는 판사와 같이 엄중한 임명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²⁹⁾

〈표 1〉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기본모형

1단계: 분쟁 접수단계: 경찰, 검사, 법원담당판사, 소비자단체, 사회서비스단체
2단계: 분쟁 진단단계: 사건접수, 선별, 진단, 분쟁해결수단 선정
3단계: 분쟁 해결단계: 조정, 알선, 중재, 음부즈맨, 소송

26) multi-door dispute resolution center 또는 multi-door center라고도 호칭한다.

27) 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조정-중재제도가 노동분쟁을 해결하는데 사용되었다.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4권 제1호, 2014, p.89.

28) Ray, Larry and, Clare, Anne, “The Multi-Door Courthouse Idea: Building the Courthouse of the Future---Today”,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1, No.1, 1985 p.9.

29)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 No.2, 1996, p.332.

3.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

본 연구는 기존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모형이 개념제시에 국한된 점을 직시하고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기본 모형을 수정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랭크 샌더 교수가 제창한 법원 모형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법원’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나 샌더교수는 ‘새로운 유형의 법원’ 기본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동 모형을 직접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실제 실행은 미국의 연방법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일정한 형태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확장모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확장모형은 추상적 개념에 머무르기 보다는, 개념의 실행에 목표를 두어 새로운 유형의 법원인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전체적 모습을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내부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즉 멀티도어코트하우스가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부기관이 존속해야할 것이다. 마치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5장 6부가 존재하듯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기관이 존속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를 뒷받침하는 내부기관들과 이들의 기능에 대하여 상론하고자 한다. 셋째,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

1단계: 분쟁 접수단계: 사건수리부서: 경찰, 검사, 법원담당판사, 소비자단체, 사회서비스단체
2단계: 분쟁 진단단계: 사건선별부서: 사건을 진단. 선별하여 분쟁해결수단 선정
3단계: 분쟁해결담당자 선정단계 인사관리부서: 조정위원, 중재인, 판사 등 분쟁해결담당자를 선임
4단계: 분쟁 해결단계: 사무국: 조정, 알선, 중재, ombudsman, 소송절차를 관리함
5단계: 교육훈련단계 교육훈련부서: 로스쿨, 학회 등과 협력, 판사, 변호사, 조정위원, 중재인 훈련

첫째,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의 실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실행구조를 5단계로 구성하고자 한다. 본 확장모형에서 1단계는 기존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과 동일하게 분쟁 접수단계이다. 분쟁접수단계에서는 법원, 경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사건을 접수한다. 확장모형의 2단계는 분쟁 진단단계로서 분쟁의 성격, 당사자 간의 관계, 분쟁가액, 각 절차의 실행비용, 각 분쟁해결절차의 사건 해결 속도 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선정한다.³⁰⁾ 확장모형의 3단계는 분쟁해결담당자 선정단계로서 분쟁해결전문가인 판사, 조정위원, 중재인 기타 ADR 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각 분쟁해결담당자가 분쟁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단계이다. 확장모형의 5단계는 분쟁해결담당자의 교육 훈련단계이다. 사실상 교육 훈련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자체적으로 실행하기도 하지만, 외부교육기관과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멀티도어코트하우스는 주요 기능 면에서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내부에 각 단계를 실행하는 주무 부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1단계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건수리부서로서, 법원 내부와 법원 외부에 별도로 둘 수 있다. 2단계를 총괄하는 부서는 분쟁진단을 총괄하는 사건선별부서이다. 프랭크 샌더교수가 제안한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기본 모형에서는 분쟁의 접수와 진단단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확장모형에서는 분쟁의 접수단계와 분쟁의 진단 선별단계는 명확하게 구분한다. 프랭크 샌더교수는 한 명 내지 복수의 담당자가 사건을 선별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본 확장모형에서는 분쟁의 진단 단계를 중요시하여 별도로기구로서 사건선별부서를 두고자 한다. 사건선별부서에는 판사 및 중재인, 조정위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이들은 분쟁의 성격, 당사자 간의 관계, 분쟁가액, 각 절차의 실행비용, 각 분쟁해결절차의 사건해결 속도 등을 고려하여, 분쟁해결수단을 선정한다. 사실상 분쟁의 성격에 맞는 분쟁해결절차를 선정하는 것이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요체이므로 이 부서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할 것이다. 3단계를 총괄하는 부서는 인사관리부이다. 인사관리 부는 중재인 명부와 조정위원 명부 및 기타 분쟁해결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한다. 기존의 공식적인 사법제도에서는 판사라는 단일 종류의 분쟁해결담당자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공적인 선발과정을 거치고, 막대한 량의 시간과 훈련이 소요되어 전문가로서 자격을 충분히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이나 중재인³¹⁾의 경우는 그 자격과 수준이 매우

30) Hedeem, Timothy., "Remodeling the Multi-Door Courthouse To "Fit the Forum to the Folks": How Screening and Preparation Will Enhance ADR," *Marquette Law Review*, Vol. 95, No.3, 2012, p.942.

31)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중재인을 크게 학계, 법조계, 실업계로 나누어 선발하여 중재인명부를 만들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대한중재인협회가 결성되어 있다. 조정위원의 경우 한국조정학회가 발족되어 조정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조정학회에서는 조정전문가 교육을 일반 교육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해 오고 있다.

다양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분쟁해결을 담당할 ADR 전문가들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이 전문가들의 능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내에는 전문적으로 판사, 조정위원이나 중재인 등 관련 전문가 확보 계획을 세우고 수시로 이들과 접촉하는 부서가 필요한 것이다.

4단계를 총괄하는 부서는 사무국이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사무국은 기존의 중재기관들의 사무국과 마찬가지로 소송절차, 중재절차, 조정절차 등 다양한 분쟁해결절차를 실행하고 감독 관리하는 기관이다. 조정-중재(Med-Arb)절차가 분쟁해결에 활용되는 경우라면, 조정절차가 실패할 경우, 중재절차에 진입해야할 것이다.³²⁾ 사무국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총괄한다. 제5단계를 총괄하는 부서는 교육. 훈련부서이다. 확장모형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이 제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원은 법원 내부의 판사와 변호사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법조인 양성 교육기관인 로스쿨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변호사들은 실제법 자체와 소송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미국 조정사건의 경우 사건의 70퍼센트는 아는 사람간의 분쟁이며 사건의 85퍼센트는 우의적으로 해결되고 있어서 당사자들의 감정을 파악하는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되며,³³⁾ 가족법 변호사의 경우, 협업적 변호 능력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³⁴⁾ 또한 비즈니스 관련 사건의 경우, 고객의 니즈가 중요해지면서 변호사가 당사자와 변호사 간의 관계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³⁵⁾ 이러한 경우,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는 자신이 대리하는 당사자나 담당판사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되며,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조정위원 등과의 의사소통능력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된다.³⁶⁾ 더구나 인공지능(AI)이 법률산업에 도입되면서 변호사들의 전문영역은 도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변호사나 판사들에게 있어서 관련 법 규정이나 판례들에 대한 전문지식이 가장 큰 지적 재산이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도입에 따라서 더 이상 인간 판사가 인공지능과 같은 방대한 수준의 판례를 보

32) 분쟁해결담당자가 사무국에 조정절차가 실패한 사실을 통지하면, 사무국에서는 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33) Ray, Larry and, Clare, Anne, “The Multi-Door Courthouse Idea: Building the Courthouse of the Future--- Today”,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1, No.1, 1985 p.15.

34) Schwab H. William, “Collaborative Lawyering: A Closer Look at an Emerging Practice”,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4, No.3, 2004, p.355.

35) 과거에는 우월한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가 당사자들을 이끄는 관계였다면, 오늘날 교육 수준이 높은 당사자들은 보다 수평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으며, 사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비용에 대해서도 민감한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Macfarlane, Julie, “Evolution of the New Lawyer: How Lawyers are Reshaping the Practice of Law”,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8, No.1, 2008, p.72.

36) Macfarlane, Julie, ADR and the Courts: Renewing our Commitment to Innovation, *Marquette Law Review*, Vol. 95, No.3, 2012, pp.927-940. Macfarlane, Julie, “Evolution of the New Lawyer: How Lawyers are Reshaping the Practice of Law”,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8, No.1, 2008, p.67. Schwab H. William, “Collaborative Lawyering: A Closer Look at an Emerging Practice”,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4, No.3, 2004, pp.354-399.

유할 수는 없으며 실시간으로 관련 판례를 검색하기는 더욱 요원한 일이다.³⁷⁾ 더구나 사회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의사소통, 협상기술,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 등이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 및 새로운 유형의 판사의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와 판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판사들을 교육시키는 로스쿨 및 법과대학에서 협상, 조정, 중재, 의사소통기법, 문화의 다양성 등 ADR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여 변호사 지망생과 미래의 판사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확장모형은 외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쟁해결전문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된다. 동 모형의 주창자인 프랭크 샌더 교수는 분쟁해결담당자 공급처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고려하였지만 이는 단기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모든 국가에서 자원봉사자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가는 의문이 들 수 있다.³⁸⁾ 더구나 지금과 같이 대체적 분쟁해결(ADR)이 전체 분쟁해결시스템의 작은 부분에 그칠 때는 분쟁해결담당자의 공급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과 같이 전체 분쟁의 상당수가 ADR로 해결된다면, 분쟁해결담당자의 수준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ADR 관련 학회, 중재기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재인이나 조정위원을 별도로 훈련시킬 뿐 만 아니라 기존의 판사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ADR 기법 교육도 고려해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분쟁 뿐 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는 전자상거래 분쟁이나 국제상사분쟁, 국제투자 중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확장모형은 내재적으로 외부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끊임없이 소통해야 할 것이다.

4. 소 결

법원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의 목표와 이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모형의 실행 면에 있어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가장 주목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법원에 많은 사건들이 들어오는 경우, 사건을 개별적으로 하나씩 진단하는 현재의 모형 설계로는 제대로 업무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매 10분마다

37) 인간 변호사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는 사무적인 일에 바빠서 다른 사람에게 이를 부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매우 짧은 시간에 방대한 자료를 검색하여 이 중에서 동 사건과 가장 유사한 사건을 찾아낼 수 있다. 따라서 더 이상 판례 지식만으로는 인간 변호사가 인공지능의 경쟁 상대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8) 자원봉사자가 기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원봉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사건이 추가로 들어오는 법원인 경우,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상의 선별 부서는 용량 초과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³⁹⁾ 또한 가장 심각한 지적사항은 사건 선별 부서에서 적절한 분쟁해결 기법을 선택할 시 객관적 기준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⁴⁰⁾ Sander and Goldberg(1994)는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의 특성을 비용, 속도, 기밀성, 관계개선, 사건 조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였으나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⁴¹⁾ 따라서 적어도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내에서 사건 선별부서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한다고 할 수 있으며⁴²⁾,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 부서는 정규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미국의 경우,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에서 사용된 분쟁해결기법의 상대적 활용도를 비교해본 결과, 조정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법원 연계 형 중재나 기타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활용도는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³⁾ 따라서 다양한 분쟁해결제도는 제공한다든 본래의 취지가 타당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는 과연 조정이나 중재절차 등 다양한 분쟁해결수단들이 소송절차에 비하여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⁴⁴⁾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9) Edwards, Barry, "Renovating the Multi-door Courthouse: Designing Trial 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Improve Results and Control Costs", *Harvard Negotiation Law Review*, Vol.18, No.1, 2013, p.323.

40) Preston, Brian, "The Land and Environment Court of New South Wales: Moving towards a Multi-door Courthouse, Keynote address to Leader NSW Chapter Annual Dinner, Union, University Schools Club Sydney 2007. p.9.

41) Sander, E. A. Frank and Goldberg, B. Stephen, "Fitting the Forum to the Fuss: A User-Friendly Guide to Selecting an ADR Procedure", *Negotiation Journal*, Vol.10, No.1, 1994, p.53.

42) 선별담당관은 수리된 사건이 외부 개입 없이 해결될 사건인지, 조정을 통해서 해결될 사건인지 소송이 적합한 사건인지 판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Edwards (2013), p.331.

43) 실증분석 결과 미국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에서 동 기간 동안 조정이 활용된 경우는 90퍼센트 이상이었으며 중재가 분쟁해결장구로 활용된 경우나 기타 분쟁해결기구 활용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Edwards, Barry, "Renovating the Multi-door Courthouse: Designing Trial 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Improve Results and Control Costs", *Harvard Negotiation Law Review*, Vol.18, No.1, 2013, p.326.

44) 중세유럽에서 시작된 상사중재의 경우, 보부상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이동하면서 물품을 판매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마을에서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 전에 분쟁이 해결되어야 했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신속성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 시행되는 국제중재사건은 투자 중재 사건이나 다수당사자 사건에서 보듯이 과거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증가는 불가피하다는 견해 역시 제시되고 있다. Gluck, G. "Great Expectations: Meeting the Challenge of a New Arbitration Paradigm"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3, No.2, 2012. Dezalay, Y. and Garth, B., *Dealing with Virtu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국제상사중재가 국제적 로펌들의 간여로 절차적 관점에서 초기에 비하여 더 엄밀해졌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Chung, Yongkyun, Ha, Hong-You, and Kim, Kwang-Soo, "The Moderating Effect of Fairness of Arbitration and Speed of Arbitration on Korean Trader's Attitudes toward Arbitration", *Journal of Korea Trade*, Vol.18, No.2, 2014, p.90. (한국 무역업자들에 대한 실증분석에서는 응답자들이 더 이상 중재가 신속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

Ⅲ.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사례분석

본 절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사례들을 개관하고자 한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프랭크 샌더교수가 제안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유형으로 미국과 호주, 나이지리아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는 중남미 지역과 같이, 미국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을 받아들인 다음, 이를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미국과는 별도로 ADR 전통이 존재하는 중동지역 국가들과 동남아시아지역 국가에서와 같이 법다원주의(legal pluralism) 하에서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를 활용하는 유형이다.

1. 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멀티도어코트하우스는 다양한 유형의 ADR⁴⁵⁾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소개하는 ADR유형을 미국의 모든 주에서 전부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⁴⁶⁾ Brown(2005)에 의하면, 미국의 ADR제도는 주마다 다르며, 심지어는 같은 주내에서도 카운티마다 다르기도 한다.⁴⁷⁾ 또한 동일한 ADR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실행방법에 있어서도, 주법에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나타내기 어려운 실정이다.⁴⁸⁾ 예를 들어 가장 전형적인 ADR제도인 법원 연계 형 중재의 경우도, 네바다 주의 경우는 중재인의 사실인정조서가 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되도록 허용하고 있다.⁴⁹⁾ 본 연구는 미국에

45)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법 형 ADR의 종류에 대해서는 미국의 학자 간에도 서로 다른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Ward(2007)는 연방법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ADR의 예로서 중재, 조정, 조기중립평가, 간이배심심리, 간이심리, 법원화해기일과 조정-중재(Med-Arb)를 들고 있다. Streeter-Schafer(2001)는 간이배심심리, 간이심리, 법원 연계 형 조정, 법원 연계형 중재 등을 제시하고 있다. Love(1997)는 간이배심심리, 법원 연계형 조정, 법원 연계 형 중재, 사적판결(Rent-A-Judge)을 사법 형 ADR로 소개하고 있다. 김진현, 정용균, “미국의 사법형 ADR제도와 그 함의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1권 제3호, 2011년 12월, pp.55-87.

46) 심지어 동일한 주내에서도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이나에 따라서 실행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같은 연방법원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함영주, “미국 법원연계 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E.D.N.Y)과 뉴욕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4권, 2010년 6월, pp.149-192.

47) Brown G. Viola, “A Community of Court ADR Programs: How Court-Based ADR Programs Help Each Other Survive and Thrive,” *Justice Systems*, Vol. 26, 2005. Williams, Paul, C., “Court-Annexed Arbitration and Nevada’s Unique Penalty Provisions: Introducing an Arbitrator’s Findings at a Trial De Novo,” *Nevada Law Journal*, Vol 11, No.3, 2010, pp.282-301.

48) Williams, Paul, C., “Court-Annexed Arbitration and Nevada’s Unique Penalty Provisions: Introducing an Arbitrator’s Findings at a Trial De Novo,” *Nevada Law Journal*, Vol 11, No.3, 2010, pp.282-301.

49) 이는 대부분의 주에서 법원연계 형 중재의 경우, 중재인의 사실인정조서는 복심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서 최초로 멀티도어코트하우스를 실행한 세 곳 중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지고 있는 워싱턴 D.C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의 분쟁해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사건 수리. 회부센터

사건수리 및 회부센터는 대다수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가 공통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핵심적 기관이다. 왜냐하면 동 센터내의 법률전문가들이 당사자로부터 분쟁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쟁해결수단들을 당사자와 논의하고 당사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때 전문가들은 분쟁당사자에게 소송 외 대체적인 분쟁해결수단들을 소개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추천한다.⁵⁰⁾ 워싱턴 DC의 컬럼비아 멀티도어프로그램은 두 곳에 사건수리 및 회부서비스센터를 개소하였다. 한 곳은 법원 내에 마련되었으며 다른 한 곳은 워싱턴 DC 변호사협회의 사건 회부. 정보서비스센터였다. 이들은 지역주민들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방문하는 곳으로서 각 센터에는 훈련받은 법률전문가들이 고객들이 자신의 분쟁을 파악하도록 돕고 있다.

틀사 시의 멀티도어센터의 경우에는 다섯 곳에 사건수리 센터를 개소하였다. 한 곳은 소액청구사건법원이고 다른 한 곳은 경찰서 시민고충선별부서이고 또 한 곳은 지방방송공사 TV매체이고 다른 한 곳은 시장 집무실이고 마지막으로는 틀사 시 커뮤니티센터이다.⁵¹⁾ 휴스턴시의 경우에는 세 곳에서 사건을 수리하고 있는데 한 곳은 이웃정의센터(neighborhood justice center)이고 다른 한 곳은 Better Business Bureau의 조정중재서비스센터이고 다른 한 곳은 가족학대희생자 지원부서이다. 전문가들은 멀티도어 간부들이 개발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있는 회부매뉴얼에 크게 의존한다.⁵²⁾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하여 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도록 장려된다. 멀티도어 사건수리 및 회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광고전단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다. 또한 관련 정보는 워싱턴시의 여러 공동체들에 정기적으로 배포되며 지역 공동체 뉴스레터나 라디오 텔레비전, 버스 등에 광고가 게재된다.

만일 이것이 인정된다면, 중재가 화해를 유도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배석판사는 사전에 어떠한 편견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50)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0.

51) Ray, Larry and, Clare, Anne, "The Multi-Door Courthouse Idea: Building the Courthouse of the Future---Today",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1, No.1, 1985 p.20.

52) 매뉴얼은 수도 워싱턴 지역에서 40개가 넘는 분쟁해결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수백 개의 법률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들에 대한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0.

(2) 소액사건조정

소액사건은 여러 국가에서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는 분쟁유형이다. 워싱턴 DC 컬럼비아 지구 연방지방법원의 경우에도 멀티도어코트하우스에서 소송이 아닌 다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성격의 분쟁으로서 소액사건을 들고 있다. 이러한 소액사건을 소송으로 처리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이 소송가액을 초과하여 비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경우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하에서 워싱턴 DC 컬럼비아지구법원의 경우, 소액사건 조정프로그램은 1985년 4월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소액사건은 미화 2천 달러 미만의 민사소송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액사건들은 소가 제기된 날에 조정에 회부된다. 아직 소송이 개시되지 않은 사건들도 소액사건 조정에 회부될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평균 매달 약 200건의 사건들이 조정이 되고 있으며 조정에 회부된 수천 건의 사건 중에서 약 3분의 2가 조정으로 해결되었다.⁵³⁾ 일반적으로 매일 아침 법원에 7-8명의 자원봉사 조정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원봉사 조정위원들은 다양한 훈련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다. 이들 중에는 변호사, 가정주부, 정부관리, 교사, 사회학자, 법집행요원, 은퇴자, 정신건강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 다양하다. 동 프로그램에서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4일 동안 조정에 관한 훈련을 받아야하며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을 멘토로 두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1년 단위로 매주 한 번씩 조정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⁵⁴⁾

(3) 가사조정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프로그램 중 하나의 창구는 가족관계조정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대체적 분쟁해결기법이 유효한 분야 중의 하나이며, 여러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마을의 연장자 등이 민간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 왔던 분야이다.⁵⁵⁾ 전술한 바와 같이, 동 프로그램은 농촌의 민간조정제도가 약화됨에 따라서 법원 내에 민간조정과 유사한 제도를 되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 DC 컬럼비아지구법원의 경우, 가족관계 조정프로그램이 1985년 11월에 개시되었으며 휴스턴시의 경우에도 가족학대희생자 지원부서(Aid to Victims of Domestic Abuse)라는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다.⁵⁶⁾ 워싱턴 DC 컬럼비아지구법원의 경우, 동 프로그램이 가족 내 문제라는 매우 예민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설계되었다. 예를

53)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1.

54)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1.

55) Wall, James, "Community Mediation in China and Korea: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Negotiation Journal*, 1993, pp.141-153.

56) Ray, Larry and, Clare, Anne, "The Multi-Door Courthouse Idea: Building the Courthouse of the Future---Today",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1, No.1, 1985 p.21.

들어, 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당사자들이 조정과정 전체를 통하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그리고 설령 조정이 성공하더라도 조정조서에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 변호사들이 조정합의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설계하였다.⁵⁷⁾

동 프로그램 지침서에 따르면, 양 당사자들은 조정과정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만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었거나,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무기가 사용되었거나, 폭력이 상습적으로 자행되었거나, 당사자 간 협상력에 있어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⁵⁸⁾ 가족관계 조정프로그램은 자원봉사 조정위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가족문제 전문변호사들이다. 그리고 정신건강전문가들과 다른 분야 변호사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가족관계 분쟁에 대한 조정은 공동조정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능한 경우, 변호사 1인과 정신건강 전문가 1인이 짝을 이루어 공동으로 조정한다. 보통 가사 사건은 자녀양육, 자녀 보호, 배우자 지원,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동반한다. 이처럼 가사 사건 자체가 매우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40시간 별도의 훈련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⁵⁹⁾

(4) 민사 분쟁 신속해결절차

소송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출현하게 된 주요 배경 중의 하나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ADR에 대한 장점을 기술한 교과서들도 ADR의 장점중의 하나로 신속성을 들고 있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을 처음 주창한 프랭크 샌더교수 역시 분쟁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⁶⁰⁾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민사사건 신속해결프로그램은 이러한 취지를 살린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1986년 6월에 개시되었다. 컬럼비아지구 법원의 동 프로그램은 판사들이 법원에서 가장 복잡한 민사사건들을 간이배심심리, 조정, 조기중립평가⁶¹⁾ 등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을 활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⁶²⁾ 컬럼비아지구 법원은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57)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니다.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1.

58)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1.

59)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2.

60)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1996, p.330.

61) 정용균, "미국의 사법형 ADR제도와 그 합의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1권 제3호, 2011년 12월, pp.55-87.

62)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2.

경험이 풍부한 연방판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워싱턴 DC에 초빙하여 워싱턴 DC의 판사 및 변호사들과 면담을 주선했다.⁶³⁾ 이러한 노력이 있는 후, 컬럼비아 지구 법원은 복잡한 민사사건들을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은 약식재판기법과 조정을 가장 빈번하게 활용하였으며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다수 당사자 사건이거나 소송가액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사건들도 조정⁶⁴⁾, 중재와 조기중립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5) 중재

중재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 도입 초기부터 조정과 더불어 주요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제도는 법원연계 형 중재라는 형태로 미국 법원 내에 정착된 ADR 프로그램이다.⁶⁵⁾ 미국 연방법⁶⁶⁾은 1986년 1월, 10개의 연방지방법원들이 강제중재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수권하였다.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의 경우는 케슬러(Kessler) 판사가 주도하여 법원연계 형 중재제도를 설계하였으며 1987년 3월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⁶⁷⁾ 동 중재프로그램은 법원-변호사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1986년 12월 컬럼비아지구 연방지방법원의 판사회 검토를 거친 뒤에 완성되었다. 중재에 배정되는 사건들은 법원 민사부에 들어온 사건들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으며,⁶⁸⁾ 소송가액이 미화 5만 달러 미만 사건에 국한시켰다.⁶⁹⁾ 법원에서 중재명령이 내려지면, 중재인들은 30일내에 심문기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며, 사건 할당 후, 120일 이내에 심리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재인들은 중재절차가 개시되면 15일 이내에 중재판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하였다.⁷⁰⁾ 동 중재프로그램을 위해 대략 100명의 변호사들이 중재인 훈련을 받았으며 중재인들은 사건 당 미화 100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한편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법원연계 형 중재의 특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 중재프로그램에 배당되는 사건은 소송가액이 미화 10만

63)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2.

64) Streeter-Schaefer, Holly, A., "A Look At Court Mandated Civil Mediation," *Drake Law Review*, Vol. 49, 2001, pp.367-389.

65) Williams, Paul, C., "Court-Annexed Arbitration and Nevada's Unique Penalty Provisions: Introducing an Arbitrator's Findings at a Trial De Novo," *Nevada Law Journal*, Vol. 11, Fall 2010, pp.282-301.

66) U.S.C. §§ 651-658

67) 휴스턴시의 경우는 Better Business Bureau의 조정중재서비스센터에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ay, Larry and, Clare, Anne, "The Multi-Door Courthouse Idea: Building the Courthouse of the Future--- Today",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1, No.1, 1985 p.21.

68)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3.

69)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3.

70)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3.

달러 이하의 사건으로 국한된다.⁷¹⁾ 뉴욕동부지 연방지방법원 규칙에 의하면 대부분의 민사 사건은 강제중재의 대상이 된다.⁷²⁾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의 중재프로그램은 상당히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즉 당사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서 현장 증언을 시행하지 않고 이를 전문가 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⁷³⁾ 동 법원의 규칙에 의하면 중재는 답변서가 제출된 뒤에 120일내에 심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중재인은 법원의 중재담당직원이 중재인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다. 중재인은 반드시 변호사여야만 하며, 최소 5년간 변호사경력에 있어야 한다. 중재인명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 법원의 판사들이 중재인신청서를 공람한 다음 판사들이 각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최종적으로는 중재인 선정에 책임을 가진 판사가 중재인 임명 결정을 내린다.⁷⁴⁾

(6) 집중화해기일⁷⁵⁾

원래 집중화해기일 프로그램은 오하이오 주의 콜럼버스 시와 캘리포니아 주, 오린지 카운티에서 성과를 거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였다 워싱턴 DC 컬럼비아지구 연방지방법원은 동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1987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케슬러 판사, 폴 프리드만 컬럼비아지구 변호사협회장 등 워싱턴 DC 컬럼비아지구 주요 인사들은 콜럼버스 시와 오린지 카운티에서 동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얻은 후, Fred B. Ugast 수석판사에게 집중화해기일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유하였다.⁷⁶⁾ 그 내용은 동 법원에서 모든 민사소송 심리를 6일간 정지시키고, 그 정지된 기간 동안, 판사들과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적체되어 있는 민사사건들을 화해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약 백 명의 변호사들과 8명의 판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조정을 행한다. 이때 경험이 풍부한 조정위원들이 자원봉사자로서 변호사들과 판사들에게 조정기법을 훈련시키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건 중에는 십여 년 동안 미해결된 채로 남아 있던 사건도 해결된 사례가 있다. 이 분쟁해결기법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회부된 사건의 거의 절반정도가 동 제도를 통하여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⁷⁷⁾

71) 나중에는 미화 15만 달러 미만 사건으로 중재회부 사건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5년 현재 강제중재프로그램은 펜실베이니아동부지구법원과 뉴욕동부지구법원에만 존속하고 있다. Levy, M. Robert, "ADR in Federal Court: The View from Brooklyn", *Justice Systems Journal*, Vol.26, No.3, 2005, p.344.

72) 예외적으로 사회보장 관련사건, 조세관련 사건, 죄수의 권리 관련사건, 미 연방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사건 등은 강제중재에 회부되지 않는다. Levy, M. Robert, "ADR in Federal Court: The View from Brooklyn", *Justice Systems Journal*, Vol.26, No.3, 2005, p.344.

73) Levy, M. Robert, "ADR in Federal Court: The View from Brooklyn", *Justice Systems Journal*, Vol.26, No.3, 2005, p.345.

74) Levy, M. Robert, "ADR in Federal Court: The View from Brooklyn", *Justice Systems Journal*, Vol.26, No.3, 2005, p.345.

75) 원문은 Settlement Weeks이다.

76)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4.

77)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7) 네바다 주의 사례⁷⁸⁾

최근 네바다 주 법원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모형에 따라서 다양한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네바다 주지방법원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경우, 청구액이 5만 달러 미만이면, 네바다 중재규칙에 따라서, 법원연계 형 중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한 중재인이 사건 심리를 담당하며, 만약 당사자 일방이 중재판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당사자는 항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임시판사가 주재하는 약식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네바다 주는 2001년 이래 법원 연계 형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네바다 주법원은 화해기일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조정위원이 화해진담 판사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화해진담판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사건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 네바다 주 대법원은 1996년부터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화해기일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넷째, 네바다 주는 간이배심절차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 네바다 주는 조기중립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 중남미지역 사례

중남미지역 국가들은 1990년대 이래로 상당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을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명칭은 멀티도어하우스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중남미 지역 사례의 특징이다. 미국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와 가장 유사하게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들 수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도시지역에는 미국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에 근접한 *Oficinas multi-puertas*를 두고 있으며, 농촌지역에는 지리적으로 법원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하여 *Casas de Justicia*를 두고 있다.⁷⁹⁾ 브라질의 경우는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이 속한 법원에서 법원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원에 사건 적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르헨티나의 *Ofcinas multi-puertas*와 유사한 멀티도어 모형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판사의 재량이 가능한 것은 브라질 민사소송법에 판사들이 ADR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브라질 판사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대립적인 소송절차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⁸⁰⁾ 한편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Casas de Justicia*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4.

78) 본 소절은 최근 네바다 주 사례를 모은 문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Segel, Nelson, "The Multi-Door Courthouse in Nevada", *Nevada Lawyer*, 2017, pp.12-14.

79) Hernandez-Crespo Mariana, From Noise to Music: The Potential of the Multi-Door Courthouse (Casa de Justicia) Model to Advance Systematic Inclusion and Participation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Rule of Law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12, No.2, 2012. p.385.

용적으로는 다양한 ADR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조정 절차 한 가지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 경우 조정위원은 무료로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경우 변호사가 당사자를 조력하지 않는다.⁸¹⁾ 니카라구아와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Casas de Justicia이라는 명칭의 기관을 두고 있지만, 내용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니카라구아의 경우는 90년대에 스웨덴, 이태리, 네덜란드 등의 지원을 받아서 UNDP가 주관하여 니카라구아의 법원 시설을 보수 개수하거나 법원 건물 내의 비품을 보충하는 등 사법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활용하여서 대체적 분쟁해결 도입이라는 취지와는 다른 형태라고 판단되다.⁸²⁾

사실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들은 정의에의 접근성(access to justice)을 중남미지역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정의에의 접근성 문제는 분쟁당사자들이 법원을 활용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 상, 법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중남미 국가들 중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이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국가 법원으로부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 근거로는 법원이 주로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농촌 거주민들은 법률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⁸³⁾ 국제기구들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취약계층이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도적 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Casas de Justicia가 주요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라는 관점에서 보면, 법원 외부에 별도의 대체적 분쟁해결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지붕 밑에 소송부서와 대체적 분쟁해결부서를 두고 있는 미국형 멀티도어 코트하우스 제도와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3. 중동지역 사례

아리비아 반도에 거주하는 유목민들은 이슬람교가 들어오기 전,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고, 부족 단위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부족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하나의 공통된 법률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면, 중

80) Hernandez-Crespo Mariana, From Noise to Music: The Potential of the Multi-Door Courthouse (Casa de Justicia) Model to Advance Systematic Inclusion and Participation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Rule of Law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12, No.2, 2012. p.386.

81) Hernandez-Crespo Mariana, From Noise to Music: The Potential of the Multi-Door Courthouse (Casa de Justicia) Model to Advance Systematic Inclusion and Participation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Rule of Law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12, No.2, 2012. p.391.

82) Hernandez-Crespo Mariana, From Noise to Music: The Potential of the Multi-Door Courthouse (Casa de Justicia) Model to Advance Systematic Inclusion and Participation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Rule of Law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12, No.2, 2012. p.381.

83) Maru, Vivek, "Access to Justice and Legal Empowerment: A Review of World Bank Practice", *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Vol.2, 2010.

동지역은 국가 법률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대체적 분쟁해결기법들인 중재나 조정이 행해지고 있었다.⁸⁴⁾ 따라서 법률이 먼저 존재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법원에서 소송이 먼저 진행되어 오다가 뒤에 대체적 분쟁해결기법이 도입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대체적 분쟁해결이라고 부르는 수단들이 고유의 분쟁해결기법이었다. 보통 부족들은 sulh이라는 분쟁해결기법을 사용하여 부족 간 분쟁을 해결하여 왔는데 이는 서양의 개념에서 보면 조정과 가까운 개념이다. 이와 동시에 중재 개념 역시 존재하였다. 이슬람교의 발원자라고 할 수 있는 예언자 모하메드는 포교 활동 초기에 조정인인 동시에 중재자로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연원에서 보듯이 아라비아사막에서는 이슬람교가 발흥하기 전부터 조정 및 중재제도가 존재하였다.

지금도 중동지역 부족민 사이에서는 shulha라는 분쟁해결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⁸⁵⁾ 샤리아법원에서는 조정(sulh), 중재(tahkim), 조정-중재, 움부즈맨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⁸⁶⁾ 술(sulh)은 우의적 해결방법으로서 오늘날 샤리아 이슬람법이 인정하는 제도화된 분쟁해결방법이다. 중재(tahkim)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이슬람교 이전부터 아라비아 유목민 사회에서 내려온 전통이다.⁸⁷⁾ tahkim은 이슬람교 조항에 기준을 두고, 분쟁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3자에게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이때 제3자가 중재판정을 내리면, 이 중재판정은 양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 현대적 의미의 중재와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중재는 전통문화 속에 사용되어 왔지만 20세기에 들어서 서방세계로부터 중재절차가 도입되었다. 일례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가 채굴되면서 서방세계의 석유회사들과 사우디정부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계약서에는 중재조항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우디 정부 측에서는 계약서상의 중재절차 운용에 있어서 실망한 점이 많았다.⁸⁸⁾ 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중재절차에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84) Sayen, George,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the Islamic Legal Tradition in Saudi Arab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No.4, 2003, pp.905-956.

85) Pely, Doron, "Resolving Clan-Based Disputes Using the SULHA, the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of the Middle East", *Dispute Resolution Journal*, 2008/2009, pp.80-88.

86) Rashid, K. Sy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Context of Islamic Law",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Vol.8. No.1, 2004, pp.95-118. Chung, Yongkyun, "Combining Arbitration with Mediation; Two Cultures of China and Malay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26, No.3, 2016, pp.185-212.

87) Sayen, George,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the Islamic Legal Tradition in Saudi Arab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No.4, 2003, pp.905-956.

88) Sayen, George,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the Islamic Legal Tradition in Saudi Arab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No.4, 2003, pp.905-956.

4. 동남아시아지역 사례

동남아시아 지역은 과거에 식민지였다가 2차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법다원주의(legal pluralism)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⁸⁹⁾ 즉 이들 국가에서는 서양에서 수입한 근대식 법률체계를 준거법으로 하는 법원과 원래 그 지역에 통용되고 있던 관습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법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의 법원은 영국의 보통법이 행해지는 통상적인 개념의 법원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법이 준거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샤리아 법원이다. 20세기 전반, 말레이시아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동 기간 동안에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의 법률인 보통법이 도입되었고 근대적 의미의 법원이 도입되었다. 한편 이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민 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관계로 인하여 이슬람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샤리아법원이 병존하고 있다. 샤리아법원에서는 이슬람의 전통적 분쟁해결기법이 사용되고 있다.⁹⁰⁾ 전술한 바와 같이 이슬람교가 발원한 아라비아 반도 유목민들은 *sulh*이라고 부르는 분쟁해결기법을 사용하여 부족 간 분쟁을 해결하여 왔는데 이러한 이슬람교의 전통은 말레이시아에서도 행해지고 있다.

샤리아법원에서 행해지는 대체적 분쟁해결기법에는 조정(*sulh*), 중재(*tahkim*), 조정-중재, 음버즈멘 등 다양한 기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분쟁해결에 활용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해결기법들은 특히 가족 관계 분쟁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동지역이나 말레이시아나 샤리아법원에서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미얀마의 경우는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보통법이 행해지는 한편, 버마 왕조시대부터 수백 년 간 내려져온 상좌부 불교의 담마땃(*Dhammathat*)이라는 불교문헌들이 관습법으로 존재하고 있다.⁹¹⁾ 더구나 미얀마에서는 버마왕조시대인 12세기부터 변호사 직업이 존재하였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변호사들은 법정에 출두할 때, 특징의 의복을 입고 입

89) Merry, E. Sally, "Legal Pluralism", *Law & Society Review*, Vol.22, No.5, 1988, p.870.

90) Chung, Yongkyun, "Combining Arbitration with Mediation; Two Cultures of China and Malay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26, No.3, 2016, pp.185-212.

91) 담마땃은 동남아시아 불교국가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에 전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버마 담마땃이 가장 유명하다.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p.63-91. 담마땃은 18개 세부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부채에 관한 계약법, 결혼할 때 혼수품에 관한 법률, 물품매매 법, 노예에 관한 법률, 상속법, 도박에 관한 법률, 공격에 대한 법률, 절도에 관한 법률, 고용에 관한 법률, 간통에 관한 법률, 토지 분배에 관한 법률, 재산 구입에 관한 법률, 비난에 관한 법률, 재산의 축적에 관한 법률, 동산선취특권에 관한 법률, 이혼에 관한 법률, 두발 달리거나 네발달린 동물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오늘날 민법과 형법을 아우르고 있다.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Martinus Nijhoff, 1963.p.10.

장하였으며, 일정한 보수를 받고, 도시의 특정구역에 거주하였다고 문헌에서 전하고 있다.⁹²⁾ 오늘날에도 미얀마 불교도 여성이 다른 지역 남성과 결혼할 때에는 담마땃에서 발진된 버마불교도법⁹³⁾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현대에도 여전히 담마땃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불교 법 문헌 대가인 헉슬리 교수에 의하면, 담마땃은 주로 우의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서술⁹⁴⁾하고 있어서 오늘날 ADR가 유사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5. 오세아니아지역 사례

오세아니아지역에서는 호주 뉴 사우드 웨일즈 주의 토지. 환경법원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된다. 토지. 환경법원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는 법원내부에 다양한 분쟁해결창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토지환경법원은 총 여섯 가지 다양한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알선, 조정, 조기중립평가, 행정결정재심제도⁹⁵⁾, 소송 그리고 판사 앞에서 당사자들이 협상하여 타결을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시스템 하에서 알선은 당사자들이 알선인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상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안들을 개발하고 합의에 도달하도록 절차이다. 이때 알선인은 분쟁의 내용이나 타결의 결과에 대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타결내용을 결정짓는 역할은 부여되지 않는다. 한편 조정은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분쟁상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개발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조정위원은 분쟁의 내용이나 타결의 결과에 대하여 자문역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고 결정짓는 역할도 부여되지 않는 면에서 알선과 차이가 있다.⁹⁶⁾ 행정결정재심제도는 법규정상의 공무원이나 기관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하여 분안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입각하여 무엇이 옳바르고 바람직한 결정인지를 판단한다. 행정결정재심제도는 현장심리제도와 법원심리제도로

92)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2000, Vol.44, No.1, p.44.

93) 문홍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8권 제2호, 2014, pp.277-308.

94)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pp.63-91. Stanton, H. Thoma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utionary Tale of Colonial Burm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2014. Chung, Yongkyun, "An Eclectic View of Rule of Law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Leg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Case of ASEAN Region",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Vol.2, No.1, Kyunghee University, 2018, (forthcoming)

95) 원 명칭은 administrative merit review이다.

96) Preston, Brian, "The Land and Environment Court of New South Wales: Moving towards a Multi-door Courthouse, Keynote address to Leader NSW Chapter Annual Dinner, Union, University Schools Club Sydney 2007, p.15.

나뉜다. 법원 등록처는 어느 유형이 바람직한지 사건의 쟁점, 동 동 행정결정으로 인한 과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현장심리제도는 현장에서 시행된 쟁점사실에 대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나 판결과는 달리 기록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법원심리절차는 항소에 대한 최종결정이 기록된다.⁹⁷⁾ 호주 토지 환경법원의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다른 점은 사건수리부서에 근무하는 담당관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법원의 정규직 직원이라는 점이다.⁹⁸⁾ 사건수리부서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동 업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쟁에 대하여 실체적, 절차적, 전문적 관점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한다. 토지환경법원은 사건을 진단하고 분쟁해결창구 종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아직 매뉴얼이 개발되어 있지는 않으며, 당사자들의 희망사항, 분쟁의 성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분쟁해결절차를 결정하고 있다.

6. 아프리카지역 사례

아프리카 지역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가 설립된 사례로는 나이지리아 사례를 들 수 있다. 2002년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에 멀티도어코트하우스가 설립되었다. 설립배경은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기인한다. 나이지리아에는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구인 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에서는 분쟁 당사자는 분쟁의 소송가액에 따라서 고등법원이나 하급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⁹⁹⁾ 나이지리아 국민은 헌법상 자신을 대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문맹률이 35퍼센트에 달하고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2010년 통계에 의하면 나이지리아 국민의 69퍼센트는 저소득층이어서 공식적 분쟁해결기구에 호소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더구나 2012년 4월 현재 라고스 주에는 54명의 고등법원 판사와 108명의 하급심판사가 약 2천만명 이상을 관할하고 있다. 따라서 판사들의 숫자가 적은 관계로 인하여 사건이 적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고스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는 단일화되어 있는 분쟁해결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고스멀티도어코트하우스가 사건을 수리하는 창구는 두 가지이다. 하나의 창구는 법원의 법관을 경유해서 사건이 회부되는 절차이며 다른 창구는 당사자들이 직접 라고스 멀티

97) Preston, Brian, "The Land and Environment Court of New South Wales: Moving towards a Multi-door Courthouse, Keynote address to Leader NSW Chapter Annual Dinner, Union, University Schools Club Sydney 2007, p.15.

98) Preston, Brian, "The Land and Environment Court of New South Wales: Moving towards a Multi-door Courthouse, Keynote address to Leader NSW Chapter Annual Dinner, Union, University Schools Club Sydney 2007, p.17.

99) Onyema, Emilia, "The Multi-door Courthouse (MDC) Scheme in Nigeria: A Case Study of the Lagos MDC", 2012.

도어코트하우스 사무실을 방문해서 ADR 분쟁해결기법 들 중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청원하는 방법이다. 온예마교수가 수집한 통계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 전체 사건의 58.3퍼센트는 법원을 통하여 라고스 멀티도어코트하우스에 회부되었고, 전체 사건의 41.1퍼센트는 분쟁당사자가 직접 라고스멀티도어코트하우스를 방문하여 회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⁰⁾ 주요 분쟁해결기법은 중재와 조정이다. 온예마교수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중재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당수가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¹⁾

IV. 함 의

1. 성공과 위협요인

(1) ADR 핵심가치 유지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는 본래 절차가 복잡하고, 대립적 성격의 소송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ADR 프로그램 내에 대립적 성격의 절차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¹⁰²⁾ 즉 일부에서는 법원 내 조정프로그램들이 소송절차와 유사해져가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ADR 프로그램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당사자를 대리함에 따라서 우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조정절차가 점차 대립적 성격의 중재절차와 유사해져가고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¹⁰³⁾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가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 법원 내 ADR 프로그램은 사건의 해결이나 당사자 합의 건수 등 성과자체에 중점을 두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¹⁰⁴⁾ 학자들이나 실무자들은 조정위원이 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하여 분쟁당사자들을 만족시키기 보다는,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조정의 핵심가치는 회복 적 정의의 실현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¹⁰⁵⁾ 이러한 조정

100) Onyema, Emiia, "The Multi-door Courthouse (MDC) Scheme in Nigiria: A Case Study of the Lagos MDC", 2012.

101) Onyema, Emilia, "The Multi-door Courthouse (MDC) Scheme in Nigiria: A Case Study of the Lagos MDC", 2012.

102) Welsh Nancy A., "The Thinning Vision of Self-Determination in Court-Connected Mediation: The Inevitable Price of Institutionalization?," *Harvard Negotiation and Law Review*, Vol. 6, No.1, 2001, pp.1-96.

103) Nolan-Haley, Jacqueline, "Mediation: The "New Arbitration", *Harvard Negotiation Law Review*, Vol.17, No.1, 2012, p.61.

104) Senft Louise P. and Savage, Cynthia A., "ADR in the Courts: Progress, Problems, and Possibilities," *Penn State Law Review*, Vol.108, Summer 2003, pp.327-348.

105) Hedeem, Timothy., "Remodeling the Multi-Door Courthouse To "Fit the Forum to the Folks": How Screening and Preparation Will Enhance ADR," *Marquette Law Review*, Vol. 95, No.3, 2012, p.949. 조정의 핵심적 가

의 핵심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성공에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¹⁰⁶⁾

(2) 분쟁해결담당자의 교육

멀티도어코트하우스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분쟁해결 담당자의 자질문제와 그들에 대한 교육 훈련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초기부터 법원 내 ADR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변호사들과 조정위원들이 직업윤리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¹⁰⁷⁾ 그러나 법원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ADR 절차와 현장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실제 경험한 ADR 절차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ADR 분쟁해결담당자¹⁰⁸⁾가 훈련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ADR 절차를 시행하는 중에 법원에서 제시하는 절차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¹⁰⁹⁾ 더구나 분쟁해결담당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¹¹⁰⁾ 일부 법원에서는 법원 내부에 분쟁해결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원에서는 AD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법원에 따라서는 이러한 외부 인력에 대하여 보수를 지불하기도 하고 혹은 순전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활용하기도 하였다.¹¹¹⁾ 이러한 다양한 인적자원 조달로 인하여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프랭크 샌더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ADR 종사자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¹¹²⁾ 일부 학자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건접수담당자의 진단 및 분쟁해결창구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¹¹³⁾ 더구

치가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라면, 소송의 핵심적 가치의 하나는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라고 할 것이다.

- 106) 그러나 현실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 ADR 제도가 미국 사법제도 안으로 도입된 초기에는 변호사 등 관계당사자들이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ADR 프로그램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자, 자연스럽게 분쟁해결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사법제도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ADR 제도가 분쟁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자 제도의 안정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는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다양한 입법조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는 조정 등 ADR 제도가 가지는 본래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분쟁해결의 안정성과 ADR의 핵심 가치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107) 서정일 박사는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정제도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정일, “조정제도의 통합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2호, 2013, p.37.
- 108) 분쟁해결담당자는 중재의 경우는 중재인, 조정의 경우는 조정인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지칭한다.
- 109)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Have We Fou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No.1, 2002, p.115.
- 110)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Have We Fou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No.1, 2002, p.115.
- 111) Brown, G. Viola, “A Community of Court ADR Programs: How Court-Based ADR Programs Help Each Other Survive and Thrive,” *Justice Systems Journal*, Vol. 26, No.3, 2005, p.330.
- 112)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No.1, 2000, p.8.

나 너무 신속한 해결만을 고집하다 보면, 당사자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분쟁해결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평가된다.¹¹⁴⁾ 다만 이러한 교육 훈련이 어떤 수준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¹¹⁵⁾

(3) 기금확보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성공 요인의 하나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금 확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컬럼비아지구법원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컬럼비아지구법원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실험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만약 컬럼비아지구법원의 Moultrie 수석판사가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실험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컬럼비아지구에서 이러한 실험이 개시되지 못했을 것이다.¹¹⁶⁾ Moultrie 수석판사는 임기동안 법원 내 ADR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수석판사가 된 Fred B. Ugast 역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실험과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컬럼비아지구 변호사협회 역시 막대한 지원을 하였는데, 변호사협회 소속 회원들은 프로그램 지침서 개발에 도움을 주었으며 프로그램 실행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해주었다.¹¹⁷⁾

113)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 No.2, 1996, pp.374-375.

114) 한국중재학회, 한국조정학회나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중재인협회 등은 지속적으로 조정이나 중재관련 전문 지식을 확산시키거나, ADR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가나 민간기구들이 조정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박노형, "조정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분쟁해결』, 한국조정학회, 장간호, 2011. 이 로리, "조정인 인증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7권 제2호, 2017, pp.121-142.

115) 법관이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외부 기관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종래에는 법관이나 변호사의 자격요건으로 법률적 전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ADR전문가의 경우, 어떠한 내용의 훈련을 얼마 기간만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협업적 변호사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적어도 가족법 분야에서는 전문 판사나 변호사의 교육 훈련내용에 새로운 검토가 필요해지고 있다. 변호사 업무는 크게 보아, 해당 사건을 파악한 다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협상전략을 개발하고 실제 협상에 돌입한다. 과거에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그러나 최근에는 협상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Macfarlane, Julie, "Evolution of the New Lawyer: How Lawyers are Reshaping the Practice of Law",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8, No.1, 2008, p.69. ADR 전문가의 교육 내용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ADR 전문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중재인의 자질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법적인 전문성이 아울러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절차적 정의와 해당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명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Chung, Yongkyun and Ha, Hong-Youl, "Arbitrator Acceptabi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Trading Firm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27, No.3, 2016, p.390. 그러나 조정위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조정의 종류만큼 훈련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나라마다 조정위원의 자격과 역할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조정위원의 경우 서구세계의 조정위원과는 달리 중립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 조정위원의 경우 서구세계의 조정위원보다는 권위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용균, "중국의 민간조정제도 논쟁연구",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 연구센터, 제14권 제2호, 2010, pp.338-339.

116)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7.

사실 최근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걸쳐서 기금이 부족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기금결핍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¹¹⁸⁾ 상당수 법원들이 ADR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¹⁹⁾ 또한 법원 내부의 ADR프로그램들은 전통적인 법원 내 소송 프로그램과 제한된 기금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의 관계 당사자들은 ADR 프로그램이 법원과는 무관한 외부에서 이식한 별도의 프로그램이기보다는 그 자체가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일부라는 관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법원제도에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법원 관계자 및 외부 기관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법조인의 협력과 변호사 교육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라는 새로운 유형의 법원 모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원 내 법관들과 변호사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규정에는 소가 제기된 사건들에 대하여 대체적 분쟁해결기법들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¹²⁰⁾ 이처럼 규칙과 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한다면 법관들이 ADR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¹²¹⁾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 주 중부지구법원에서는 1994년 조정, 화해기일, 간이배심절차와 같이 세 종류의 대체적 분쟁 해결프로그램이 법원 내에 설치되었다. 제도가 시행된 지 십년간 진행을 살펴보면, 일부에서는 상당 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대부분은 소수의 사건만 조정에 회부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²⁾ 텍사스 주 서부지구 법원의 경우에도 법원에 대체적 분쟁해결프로그램들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³⁾ 따라서 법관들의 역할이 멀티도어코트하우스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17)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8.

118)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No.1, 2000, p.8.

119)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We Fo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No.1, 2002, p.118.

120)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We Fo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2002, pp.93-

121) McAdoo, B. and A. Hinshaw, "The Challenge of Institutionalizing Alternative Disput Resolution: Attorney Perspectives on the Effect of Rule 17 on Civil Litigation in Missouri", *Missouri Law Review*, Vol.67, No.3, 2002, p.473.

122) Brown, G. Viola, "A Community of Court ADR Programs: How Court-Based ADR Programs Help Each Other Survive and Thrive," *Justice Systems Journal*, Vol. 26, No.3, 2005, p.331.

123) Brown, G. Viola, "A Community of Court ADR Programs: How Court-Based ADR Programs Help Each Other Survive and Thrive," *Justice Systems Journal*, Vol. 26, No.3, 2005, p.332.

한편 변호사 역시 분쟁해결수단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¹²⁴⁾ 그러나 미국 일부지역에서는 변호사들이 ADR 사용을 기피하거나, ADR이 필요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⁵⁾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¹²⁶⁾한 데 기인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¹²⁷⁾ 따라서 프랭크 샌더교수는 변호사에 대한 ADR교육을 강조한다.¹²⁸⁾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변호사들의 소송 지향적 심리가 원인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내 오랜 법문화는 변호사를 전사로 영웅시하는 경향이 있다.¹²⁹⁾ 많은 사람들은 대체적 분쟁해결기법들이 부드럽고 불교 선승과 같은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법문화로 인하여 대체적 분쟁해결에 의존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고객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멀티도어코트하우스라는 새로운 유형의 법원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협업적 변호사라는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가 출현하고¹³⁰⁾ 해외에서 법률에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리걸 테크(Legal Tech)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는 점¹³¹⁾에 비추어 볼 때, 로스쿨에서 변호사를 양성할 때, 협업기법이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 중재 등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여 초기부터 이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분쟁해결전문가의 조달

멀티도어코트하우스모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쟁해결전문가의 조달이 필수적이다. 미국에서 초기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게 된 주요 요인 들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의 존재이다. 프랭크 샌더 교수는 자원봉사자들이 멀티도어코트

124)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No.1, 2000, p.8.

125) McAdoo, B. and A. Hinshaw, "The Challenge of Institutionaliz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ttorney Perspectives on the Effect of Rule 17 on Civil Litigation in Missouri", *Missouri Law Review*, Vol.67, No.3, 2002, pp.473.

126) Senger, Jeffrey, "Turning the Ship of Stat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2000, No.1, p.89.

127) 예를 들어 일부 변호사들은 조정과 중재 간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Brown, G. Viola, "A Community of Court ADR Programs: How Court-Based ADR Programs Help Each Other Survive and Thrive," *Justice Systems Journal*, Vol. 26, No.3, 2005, p.329.

128)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No.1, 2000, p.8.

129) Senger, Jeffrey, "Turning the Ship of Stat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0, No.1, p.88.

130) 협업적 변호 능력은 가족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해결방향의 변호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Macfarlane, Julie, "Evolution of the New Lawyer: How Lawyers are Reshaping the Practice of Law",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8, No.1, 2008, p.69. Hilbert, Jim, "Collaborative Lawyering: A Process for Interest Based Negotiation", *Hofstra Law Review*, Vol.38, 2010, 1087. 사법고시를 통하여 선발된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선발된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가 내용 면에서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면 갈등의 소지는 적어진다고 할 것이다.

131) 2017년 미국의 대형 로펌인 베이커 & 호스테틀러가 인공지능 변호사인 Ross를 채용하였다. 로스는 1초에 책 1백만 권 분량의 빅데이터를 분석 자체 학습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우스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¹³²⁾ 사실 미국의 경우, 멀티도어코트 하우스 프로그램이 개시되자, 자원봉사자들이 상당수 이 프로그램 진행에 기여하였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 프로그램 초기에 폭넓은 홍보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자원봉사 신청을 하였다. 또한 조정위원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변호사협회가 많은 수의 변호사들에게 이 멀티도어하우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였던 것도 성공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미래에 복잡한 민사사건에 대한 조정은 요구조건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보장이 있기가 어렵다.¹³³⁾ 문제는 조정위원이 장기간 동안 보수 없이 조정을 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¹³⁴⁾ 프랭크 샌더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ADR 종사자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¹³⁵⁾ 또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¹³⁶⁾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당수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미 사회가 전통사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 연장자가 분쟁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체계적, 제도적으로 분쟁해결전문가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소결

현재 미국 등에서는 ADR제도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1976년 파운드 회의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각 로스쿨에서는 많은 대체적 분쟁해결과목들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 2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3-4개 과목을 개설한 로스쿨들도 있을 만큼 대체적 분쟁해결과목은 구비되어 있다.¹³⁷⁾ 그만큼 변호사들이 대체적 분쟁해결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권인 중

132)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No.1, 2000, p.8.

133)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7.

134)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p.587.

135)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No.1, 2000, p.8.

136)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 1996, p.373. 함영주 교수 역시 조정위원에 대하여 무보수로 일하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함영주, "미국 법원 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E.D.N.Y)과 뉴욕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4권, 2010년 6월, p.189.

137) 이로리, "미국 로스쿨에서의 협상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2호, 2013년 6월, pp.115-139.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 2000, No.1, 2000, pp.3-10.

동지역이나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등 여러 국가에서도 소송 외 다양한 분쟁해결 제도가 존재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이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ADR의 핵심제도인 조정에 대한 회의 역시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조정 역시 제도화됨에 따라서 원래 지니고 있던 융통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 의하면, 미국 법원내부에서 ADR을 시행하여도, 소송지체나 비용절감의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¹³⁸⁾ 또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 법원들 역시 기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향후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의 형성배경을 개관하였으며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기본 모형과 이를 발전시킨 확장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이 확산되는 양태를 보기 위하여 미국, 중남미,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아프리카 대륙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회원국들이 민사소송절차에 조정절차를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¹³⁹⁾ 사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이 확산과정에 있다고 평가된다. 멀티도어코트하우스라는 모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조정제도가 법원내부에 시행되고 있어서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동 모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현재 법원에 소송사건이 적체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우리 법원 판사들은 상당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성격이 우의적으로 해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았을 때, 다양한 분쟁해결프로그램의 설립과 정착은 매우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다양한 AD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멀티도어코트하우스 모형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하겠다. 특히 멀티도어코트하우스모형이 제공하는 분쟁해결수단 중 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양한 형태의 조정제도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법원 연계형 중재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부

138) Wald, M. Patricia, "ADR and the Courts: An Update", *Duke Law Journal*, Vol.46, No.3, 1997, p.1447.

139) Malacka, Michael, "Multi-Door Courthouse: Established Through the European Mediation Directive", *ICLR*, Vol.16, No.1, 2016. 박철규,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영.독.불.일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제27권 제1호, 2016, pp.113-149.

에서는 법원 연계 형 중재제도의 내용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쟁해결창구 중에서 조정의 상대적 활용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향후 멀티도어코트하우스모형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면,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모형 설계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사법제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인다. 첫째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시장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법률시장의 관점에서는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설립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육성되었으나 하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변호사들과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변호사들 간에 차별성이 없다면 많은 갈등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수출 진흥 정책으로 경제발전에 성공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에 있어서, 국제상사중재, 국제투자 중재 등 다양한 ADR의 등장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ADR 관련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ADR 참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ADR기관과 멀티도어코트하우스로 대변되는 법원과의 역할 분담, 변호사와 민간 ADR 참여자간의 역할 분담 역시 추후 논의되어야할 사항이다. 셋째, 리걸 테크의 출현으로 변호사와 인공지능 간에 영역갈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에는 리걸 테크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법학회가 창립되었다. 향후 변호사가 담당할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개념은 하나의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로스쿨의 변호사 양성에 있어서도, 조정, 중재, 비교문화 이론 등 다양한 분쟁해결 기법에 필요한 교과목 개발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나이지리아나 호주, 중남미의 경우는 문헌이 부족하여 심층적인 연구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호주나, 나이지리아, 중남미 국가사례연구는 본 논문에서 서술한 바가 그 해당지역 전체를 대표할만한 일반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한다. 둘째, 미국의 경우에도, 사례분석이 주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실험이 행해진 세 곳 중 워싱턴 DC의 컬럼비아지구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해진 한계점이 있다. 향후 미국의 여러 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멀티도어코트하우스 사례에 대한 연구는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셋째, ADR 전문가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보다 풍부한 실증분석이 요청되나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에 치중하였다. 실증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추후 연구 과제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권순일, “미국의 멀티도어 코트하우스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제573호, 2004.
- 김진현, 정용균, “미국의 사법 형 ADR제도와 그 함의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1권 제3호, 2011.
- 문홍안, “미얀마 가족법의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제28권 제2호, 2014.
- 박노형, “조정 선진화 및 활성화 소고”, 『분쟁해결』, 한국조정학회, 창간호, 2011.
- 박철규, “ADR법 발전과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영.독.불.일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미국헌법학회, 제27권 제1호, 2016.
- 서정일, “조정제도의 통합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2호, 2013.
- 성준호,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 내용과 발전적 운용”,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7권 제4호, 2017.
- 손수일, “미국법원에서의 ADR 발전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Early Neutral Evaluation”, 『재판자료』, 법원도서관, 제73집, 1996.
- 유병현, “미국의 소송대체분쟁해결제도(ADR)의 현황과 도입방안”,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3권, 제1호, 2009.
- 유승훈, “민사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4권, 제1호, 2001.
- 이로리, “미국 로스쿨에서의 협상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3권 제2호, 2013.
- 이로리, “조정인 인증제에 관한 국제적 동향: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7권 제2호, 2017.
- 이영진, “법원 조정의 이해: 조정전담부의 운영현황과 조정실무”, 『제1기 조정전문가 과정자료집』,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조정학회, 2012.
- 이준상, “미국에서의 ADR 운영현황(법원실무를 중심으로)과 우리나라에서의 활성화 방안”, 『재판자료』, 제107집, 2006.
- 정갑주, “미국법원에 있어서 ADR의 제도화”, 『재판자료』, 법원행정처, 제58집, 1992.
- 정용균, “중국의 민간조정제도 논쟁연구”, 『국제지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제14권 제2호, 2010.
- 정용균, “미국의 조정-중재(Med-Arb)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한국중재학회, 제24권

- 제1호, 2014.
- 정용균, “인도네시아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ADR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남아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제25권 제3호, 2016.
- 정용균, “태국의 분쟁해결 및 협상전략: Hofstede의 비교문화경영이론을 중심으로”, 『태국학회논총』, 한국태국학회, 제23권 제1호, 2016.
- 정용균, “베트남의 분쟁해결문화와 협상전략: 지역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8권 제4호, 2016.
- 최승필, “행정법상 재판외분쟁해결제도(ADR)에 대한 고찰: 조정제도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1권 제1호, 2010.
- 함영주, “미국 법원 연계 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뉴욕동부 연방지방법원(E.D.N.Y)과 뉴욕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사소송』,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제14권, 2010.
- Brazil, Wayne, D., “Court ADR 25 Years after Pound: Have We Found a Better Way?”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8, No.1, 2002.
- Brown, G. Viola, “A Community of Court ADR Programs: How Court-Based ADR Programs Help Each Other Survive and Thrive,” *Justice Systems Journal*, Vol. 26, No.3, 2005.
- Chung, Yongkyun, “Combining Arbitration with Mediation; Two Cultures of China and Malaysia”,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ol.26, No.3, 2016.
- Chung, Yongkyun, “An Eclectic View of Rule of Law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Legal Development Assistance: The Case of ASEAN Region”,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Vol.2, No.1, Kyung-Hee University, 2018 (forthcoming)
- Chung, Yongkyun, Ha, Hong-Youl, and Kim, Kwang-Soo, “The Moderating Effect of Fairness of Arbitration and Speed of Arbitration on Korean Trader’s Attitudes toward Arbitration”, *Journal of Korea Trade*, Vol.18, No.2, 2014.
- Chung, Yongkyun and Ha, Hong-Youl, “Arbitrator Acceptability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 Trading Firm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27, No.3, 2016.
- Dezalay, Y. and Garth, B., *Dealing with Virtu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a Transnational Legal Orde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Dress, P I,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Loyola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Vol.10, No.3, 1988.
- Edwards, Barry, “Renovating the Multi-door Courthouse: Designing Trial 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to Improve Results and Control Costs”, *Harvard Negotiation Law Review*, Vol.18, No.1, 2013.

- Gluck, G. "Great Expectations: Meeting the Challenge of a New Arbitration Paradigm" *American Revie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3, No.2, 2012.
- Hedeen, Timothy., "Remodeling the Multi-Door Courthouse To "Fit the Forum to the Folks": How Screening and Preparation Will Enhance ADR," *Marquette Law Review*, Vol. 95, No.3, 2012.
- Hernandez-Crespo Mariana, "From Noise to Music: The Potential of the Multi-Door Courthouse (Casa de Justicia) Model to Advance Systematic Inclusion and Participation as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Rule of Law in Latin America",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12, No.2, 2012.
- Hilbert, Jim, "Collaborative Lawyering: A Process for Interest Based Negotiation", *Hofstra Law Review*, Vol.38, 2010.
- Huxley, Andrew, "Studying Theravada Legal Litera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Vol.20, No.1, 1997.
- Kessler Gladys and Linda J. Finkelstein,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Catholic University Law Review*, Vol.37, No.3, 1988.
- Levy, M. Robert, "ADR in Federal Court: The View from Brooklyn", *Justice Systems Journal*, Vol.26, No.3, 2005.
- Love, P. Lela, "The Top Ten Reasons Why Mediators Should Not Evaluate", *Florida State University Law Review*, Vol.24, Summer 1997.
- Malacka, Michael, "Multi-Door Courthouse: Established Through the European Mediation Directive", *ICLR*, Vol.16, No.1, 2016.
- Maru, Vivek, "Access to Justice and Legal Empowerment: A Review of World Bank Practice", *Hague Journal on the Rule of Law*, Vol.2, No.2, 2010.
- Maung, Maung, *Law and Custom in Burma and The Burmese Family*, Martinus Nijhoff, 1963.
- McAdoo, B. and A. Hinshaw, "The Challenge of Institutionalizing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ttorney Perspectives on the Effect of Rule 17 on Civil Litigation in Missouri", *Missouri Law Review*, Vol.67, No.3, 2002.
- Macfarlane, Julie, "Evolution of the New Lawyer: How Lawyers are Reshaping the Practice of Law",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8, No.1, 2008.
- Macfarlane, Julie, ADR and the Courts: Renewing our Commitment to Innovation, *Marquette Law Review*, Vol. 95, No.3, 2012.
- Merry, E. Sally, "Legal Pluralism", *Law & Society Review*, Vol.22, No.5, 1988.
- Nolan-Haley, Jacqueline, "Mediation: The New Arbitration", *Harvard Negotiation Law Review*, Vol.17, No.1, 2012.

- Onyema, Emilia, "The Multi-door Courthouse (MDC) Scheme in Nigeria: A Case Study of the Lagos MDC", Manuscript, 2012.
- Pely, Doron, "Resolving Clan-Based Disputes Using the SULHA, the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of the Middle East", *Dispute Resolution Journal*, 2008/2009.
- Preston, Brian, "The Land and Environment Court of New South Wales: Moving towards a Multi-door Courthouse, Keynote address to Leader NSW Chapter Annual Dinner, Union, University Schools Club, Sydney 2007.
- Rashid, K. Sye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n the Context of Islamic Law", *Vindobona Journal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and Arbitration*, Vol.8. No.1, 2004.
- Rack, W. Robert, "Thoughts of a Chief Circuit Mediator on Federal Court Annexed Mediation",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17, 2002.
- Ray, Larry and, Clare, Anne, "The Multi-Door Courthouse Idea: Building the Courthouse of the Future--- Today",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1, No.1, 1985.
- Sander, E. A. Frank, "Varieties of Dispute Processing," Address at the National Conference on the Causes of Popular Dissatisfac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ederal Rules Decision*, Vol. 70, 1976.
- Sander, E. A. Frank and Goldberg, B. Stephen, "Fitting the Forum to the Fuss: A User-Friendly Guide to Selecting an ADR Procedure", *Negotiation Journal*, Vol.10, No.1, 1994.
- Sander, E. A. Frank, "Future of ADR-The Earl F. Nelson Memorial Lectur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0, No.1, 2000.
- Sander, E. A. Frank and Crespo, H. Mariana, "A Dialogue between Professor Frank Sander and Mariana Hernandez Crespo: Exploring the Evolution of the Multi-Door Courthouse", *University of St. Thomas Law Journal*, Vol.5, No.3, 2008.
- Sayen, George, "Arbitration, Conciliation, and the Islamic Legal Tradition in Saudi Arab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4, No.4, 2003.
- Schwab H. William, "Collaborative Lawyering: A Closer Look at an Emerging Practice", *Pepperdine Dispute Resolution Journal*, Vol.4, No.3, 2004.
- Segel, Nelson, "The Multi-Door Courthouse in Nevada", *Nevada Lawyer*, 2017.
- Senft Louise P. and Savage, Cynthia A., "ADR in the Courts: Progress, Problems, and Possibilities," *Penn State Law Review*, Vol.108, Summer, 2003.
- Senger, Jeffrey, "Turning the Ship of State", *Journal of Dispute Resolution*, Vol.2000, No.1, 2000.
- Simon, Herbert, "Rationality as Process and as Product of Though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8, No.2, 1978.

-
- Stanton, H. Thomas, "Law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Cautionary Tale of Colonial Burma", *Asian Journal of Law and Society*, Vol.1, No.1, 2014.
- Stempel, Jeffrey, "Reflections on Judicial ADR and the Multi Door Courthouse at Twenty: Fait Accompli, Failed Overture, or Fledgling Adulthood," *Ohio State Journal on Dispute Resolution*, Vol. 11, No.2, 1996.
- Streeter-Schaefer, Holly, A., "A Look At Court Mandated Civil Mediation", *Drake Law Review*, Vol. 49, 2001.
- Wall, James, "Community Mediation in China and Korea: Som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Negotiation Journal*, Vol.9, No.3, 1993.
- Wald, M. Patricia, "ADR and the Courts: An Update", *Duke Law Journal*, Vol.46, No.6, 1997.
- Welsh Nancy A., "The Thinning Vision of Self-Determination in Court-Connected Mediation: The Inevitable Price of Institutionalization?," *Harvard Negotiation and Law Review*, Vol. 6, No.1, 2001.
- Williams, Paul, C., "Court-Annexed Arbitration and Nevada's Unique Penalty Provisions: Introducing an Arbitrator's Findings at a Trial De Novo," *Nevada Law Journal*, Vol. 11, No.3, 2010.
- Zan, Myint, "Woe Unto Ye Lawyers: Three Royal Orders Concerning Pleaders in Early Seventeenth Century Burma", *American Journal of Legal History*, Vol.44, No.1, 2000.

ABSTRACT

The Multi-door Courthouse: Origin, Extension, and Case Studies

Yongkyun Chung

The emergence of a multi-door courthouse is related with a couple of reasons as follows: First, a multi-door courthouse was originally initia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increasingly became impatient with the pace and cost of protracted litigation clogging the courts. Second, dockets of courts are overcrowded with legal suits, making it difficult for judges to handle those legal suits in time and causing delays in responding to citizens' complaints. Third, litig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disputant that has an ongoing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is case, even if winning is achieved in the short run, it may not be all that was hoped for in the long run. Four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UNDP, and Asia Development Bank urge to provide an increased access to women, residents, and the poor in local communities.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consists of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ncludes a center offering intake services, along with an array of dispute resolution services under one roof. At the second stage, the screening unit at the center would diagnose citizen disputes, then refer the disputants to the appropriate door for handling the case. At the third stage, the multi-door courthouse provides diverse kinds of dispute resolution programs such as mediation, arbitration, mediation-arbitration (med-arb), litigation, and early neutral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ded model of multi-door courthouse comprised of five layers: intake process, diagnosis and door-selection process, neutral-selection process,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and process of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extended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detailed specification of individual department corresponding to each proces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The intake department takes care of the intake process. The screening department plays the role of screening disputes, diagnosing the nature of disputes, and determining a suitable door to handle disputes.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manages experts through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data base of mediators, arbitrators, and judges. The administration bureau manages the implementation of each process of dispute resoluti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department builds long-term planning to procure neutrals and experts dealing with

various kinds of disputes within a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tworks among courts, law schools, and associations of scholars in order to facilitate the supply of manpower in ADR neutrals, as well as judges in the long run.

This study also provides six case studies of multi-door courthouses across continents in order to grasp the worldwide picture and wide spread phenomena of multi-door courthouse. For this purpose,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Argentina and Brazil,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alaysia and Myanmar), Australia, and Nigeria were chosen. It was found that three kinds of patterns are discernible during the evolu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First, the feder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land and environment court in Australia, and Lagos multi-door courthouse in Nigeria may maintain the prototype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Second, the judicial systems in Latin American countries tend to show heterogenous patterns in terms of the adaptation of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o their own environments. Some court systems of Latin American countries including those of Argentina and Brazil resemble the generic model of a multi-door courthouse, while other countries show their distinctive pattern of judicial system and ADR systems. Third, it was found that legal pluralism is prevalent in Middle Eastern countries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For example,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Saudi Arabia have developed various kinds of dispute resolution methods, such as sulh (mediation), tahkim (arbitration), and med-arb for many centuries, since they have been situated at the state of tribe or clan instead of nation. Accordingly, they have no unified code within the territory. In case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Myanmar and Malaysia, they have preserved a strong tradition of customary laws such as Dhammthat in Burma, and Shriah and the Islamic law in Malaysia for a long time. On the other hand, they incorporated a common law system into a secular judicial system in Myanmar and Malaysia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a couple of factors to strengthen or weak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The first factor to strengthen a multi-door courthouse model is the maintenance of flexibility and core valu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 also find that fund raising is important to build and maintain the multi-door courthouse model, reflecting the fact that there has been a competition surrounding the allocation of funds within the judicial system.

Key Words : Multi-door Courthouse, Extended Model of Multi-door Courthous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Court-annexed Mediation